

# 5 GHQ의 반공정책과 재일한인의 민족교육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를 중심으로

김태기



■ (위) 조선인학교 폐쇄 반대 운동(아마구치현)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조선국민학교 개교 기념사진, 조선인학교 폐쇄 반대 시위, 조선인학교 낙성식(홋카이도)



## 1. 서론

1948년 4월에 이른바 한신교육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점령군이 일본을 점령한 이래 처음으로 일본의 고베(神戸) 지역에 계엄령이 발해지고, 오사카(大阪)에서는 재일한인 중학생이 일본경찰이 뒤에서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또한 많은 재일한인 관계자가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GHQ)와 일본정부가 재일한인에게 일본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당하게 적용했고, 일본인교육을 강요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민족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일한인들은 격렬히 저항했으나, 절대권력과 싸워 이길 수 없었다.<sup>1)</sup>

\* **지은이 | 김태기** 1985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一橋大学校) 법학연구과(석사 및 박사)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했다. 일본정치외교사가 주요 연구대상이며, 박사 학위 논문은 「(戰後)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 : SCAPの対在日朝鮮人政策 1945年~1952年」(1996)이다. 동국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사를 거쳐, 1998년부터 호남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일한인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공저, 한울아카데미, 2006),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등의 저서가, 일본의 보수정치 및 우익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한국」(『한일민족문제연구』, 2006. 12), 「일본 우익의 사상과 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한일민족문제연구』, 2007. 12), 공저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08) 등이 있다. 기타 「신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양국외교의 허와 실」(『한일민족문제연구』, 2005. 12) 등의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독도와 관련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김태기, 「전후 동북아 국제관계와 재일한인 :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신(阪神)교육사건」, 『韓日民族問題研究』, 제15호 (2008년 12월) 참조.

아무튼 이 사건 이후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1949년 10월 19일 이른바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가 또다시 일본정부에 의해 강행되었다. GHQ의 지원을 받아 취해진 이 조치에 의해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듯 해방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은 두 번에 걸쳐 큰 탄압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재일한인 아동들은 이른바 조선인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일본인학교로 강제로 편입되어 일본인교육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재일한인문제 하면 우선 거론하는 것이 재일한인의 일본사회로의 동화이다.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의 조선학교가 있기는 하나, 편향적이고 폐쇄적인 교육이 문제시되어 왔고,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계 학교의 숫자는 너무 적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결국 많은 재일한인 학생들은 민족교육을 받고 싶어도 일본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사회의 차별과 민족교육의 부재 속에서 재일한인은 일본사회 속으로 동화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낳게 한 배경을 생각할 때, 한신교육사건과 60년 전에 발생한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패전 이후 일본의 민주주의 틀이 미군에 의한 일본점령기에 만들어졌듯이, 재일한인의 민족교육도 이 시기에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해방 이후 재일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민족교육에 대하여 GHQ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아니 적어도 탄압을 하지 않았다면 재일한인의 민족학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GHQ는 해방 이후 터를 잡아가는 조선인학교를 사회적인 이유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하였다. 일본정부는 대일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주권을 회복하였고, 일본점령기에 형성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신교육사건과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가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들 사건과 관련해 그간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한신교육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배경부터 시작해 그 경과,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와 자료집 등이 발간되어 그 전모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또한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sup>3)</sup>

이 연구는 당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GHQ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조선인학교 폐쇄를 일본정부에 지시하게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정부 및 사회의 반응 그리고 폐쇄조치 이후 조선인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 2. 아마구치 조선인학교에 대한 CIE 및 G2의 인식과 결정

### 1) 한신교육사건 이후 아마구치 조선인학교에 대한 점령군의 인식

한신교육사건 후, 조련(재일본조선인연맹) 측은 문부성과 5·5각서에 조인하고, 일본 학교교육법을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민족교육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인학교는 이 약속을 엄격하게는 이행하지 않았고, 문부성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분쟁 재발을 우려하여 굳이 후속적인 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마구치(山口)현에서는 25개의 조련계 조선인초등학교가 있었

2)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상동, 176~177쪽 참조.

3) 小沢有作, 『在日朝鮮人教育論 歴史編』, 東京: 亞紀書房, 1973; 梁永厚, 『戰後 大阪の朝鮮人運動 1945~1965』, 東京: 未來社, 1994; 로버트 리켓트, 『在日朝鮮人の民族自主權の破壊過程』, 『靑丘學術論集』 第6集, 1995년 3월; 金德龍, 『朝鮮學校の戰後史: 1945~1952』, 東京: 社会評論社, 2004 등의 관련 연구가 있으며,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해서는 리켓트(Robert Ricketts)의 연구와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東京: 勤草書房, 1997, 581~609쪽이 있다.

4) 이 논문은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581~609쪽을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여 논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으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만, 이 중 시모노세키(下関)시, 우베(宇部)시, 오노다(小野田)시, 이와쿠니(岩国)시에 소재하는 4개교는 1948년 7월 31일까지 야마구치현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외의 21개교는 4개교의 분교라는 이유로, 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현은 이들 조선인학교가 인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또한 조련의 좌익 활동이 점점 활발해진 1948년 말경부터, 특히 야마구치 현지사 다나카 다쓰오(田中龍夫)는 GHQ와 문부성을 방문하여 조선인초등학교에서 공산주의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며, 조선인학교의 교육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히다카 다이시로(日高第四郎)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은 12월 20일, 야마구치 현지사의 보고에 근거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고취하는 조선인학교가 적어도 한 곳이 있으며, 북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고 CIE(민간정보교육국)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GHQ에서 교육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CIE 교육과의 부과장 트레이너(J. C. Trainor)는 이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대신, 문부성이 조련 측과 서로 합의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는 정도로 수습하였다.<sup>5)</sup>

한편, 같은 시기 GHQ의 정보수집 기관인 G2(참모 2부)도 조련이 니가타(新潟)와 야마구치 등에서 과외로 한글과 공산주의를 한인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CIE에 알렸다. 그리고 1949년 1월과 2월에, G2는 야마구치현의 조선인초등학교의 교재가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고, 소련이나 북조선을 찬양하고 있으며, 조련사 무소에 붙이기 위해, 한국을 비방하고 미·소 양군의 철퇴를 호소하는 포스터 작성을 조선인초등학교 학생에게 시키고 있다고 CIE에 전하였다.<sup>6)</sup> 야마구치나 니가

5) Memo for Record by Deputy Chief to the Chief, Education Division, 20 Dec. 1948, Subj : Korean School Problem, KK/CIE- 04236(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관의 GHQ/SCAP 관계 마이크로 필름 분류 번호임. 이하, KK/CIE-00000 방식으로 표기함).

타 지역은 남북한과 근접한 항구도시(시모노세키, 니가타)로 한반도의 좌익세력과 조선의 좌익관계자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관계로 특히 조선 등의 활동에 대하여 GHQ가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곳이다.

대일점령 정책이 민주화에서 반공정책으로 완전히 기운 당시 상황에서, 미점령군은 한반도와 근접해 있는 야마구치 지역의 조선계 움직임에 대하여 특히 주시하고 있었으며, GHQ 내에서 반공정책을 주도하고 있던 G2가 조선계 조선인 학교의 실태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화정책이 반공정책으로 기운 당시 GHQ 내에서는 G2의 영향력이 당연히 커진 상태였다.

## 2) 포크너 보고서

CIE의 입장에서 보면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에 걸쳐, 조선인학교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갖가지 정보가 일본정부나 점령당국에서 CIE에 밀려들어왔다. 그것을 정리하면, 조선인초등학교에 북한 인공기가 게양되고 있다는 것,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 공산주의 선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점령통치에 대해 유해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사람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들 행위의 불법성과 관련해서 보면, 당시 GHQ는 인공기를 일본 국내에서 게양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이었다.<sup>7)</sup> 또

6) Check Sheet from G-2 to CIE, Subj : Korean School Teaches Communism on Niigata Prefecture, 7 Feb. 1948, KK/CIE-04237 ; Subj : Korean Education in Yamaguchi Prefecture, 17 Dec. 1948, KK/CIE-04236 ; Subj : Contents of Korean School Text Book, 5 Jan. 1949, KK/CIE-04235 ; Subj : Korean League Distribution Posters Containing Statements Detrimental to the Allied Forces, 10 Jan. 1949, KK/CIE-04237.

7) 한반도에 남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 전까지는 태극기를 게양하던 조선은 9월부터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인공기를 게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G2는 인공기 및 관련 포스터가 일본 국내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일본국가경찰본부에 전하도록 제8군에 '구두(口頭)로 지시하였다. 이후 현지 점령군과 일본경찰은 이를 거부하는 조선 관계자를 체포하고 발표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483-486쪽 ;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東京 : 三一書房, 1989, 209~213쪽.

한 학교 내에서의 공산주의교육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8)</sup> 단지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비나 교원자격 그리고 교과과정 등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인초등학교가 이를 엄격하게는 지키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빌미로 단속할 수 있었으나, 한신교육사건 이후 GHQ나 일본정부는 당시까지 이를 그렇게 문제 삼고 있지 않았다.

즉 당시 GHQ나 일본정부가 문제 삼고 나온 것은 북한 인공기 계양과 학교에서의 공산주의교육이었다. 조선인학교에서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조련의 영향 속에서 교육내용 속에 공산주의교육이 가미되고, 관계 국가를 지지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sup>9)</sup> 단지 조선인학교가 문부성의 인가를 받고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산주의교육을 이유로 조선인학교를 단속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요컨대, 인공기 계양이나 공산주의교육을 이유로 이를 단속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지만, 일본의 교육법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결국 조선인학교를 단속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야말로 GHQ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냉전으로 치닫는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반공을 지상과제로 삼

8) 당시 교육기본법 제8조(정치교육)에는 “양식 있는 공민에게 필요한 정치적 교양은 교육상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에 정하는 학교(학교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 필자 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또는 이를 반대하기 위한 정치교육 그리고 기타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업에서 공산주의교육을 가미한다고 하여, 이것이 교육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9) 해방 이후 조선인학교가 갑자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과서가 없었다.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급조하거나, 남한과 북한에서 조달하기도 하였다. GHQ는 이들 교과서를 수거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KK/CIE-04224, 04236, 04262, 04269 등에서 이들 교과서의 내용 및 교사의 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교재 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의 '초등인민 六'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인학교에 따라서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공산주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 있었으며, 일본 국내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을 철저히 견제하면서, 일본의 안정된 자본주의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GHQ의 최우선 과제였다. GHQ는 모든 사안을 반공이라는 잣대로 가늠하였으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GHQ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조련의 공산주의자는 일본공산당의 선봉적인 활동가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조련의 활동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반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CIE 연락조사계(Liaison and Investigation Branch)의 지방연락관(Field Liaison Officer)인 포크너(Theodore A. Faulkner)는 조선인학교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그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아마구치 현지사, G2, 그리고 현지 점령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가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공산주의교육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포크너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상사에게 구신할 것을 생각하고, 1월 17일 G2에서 검열을 담당하던 CCD(Civil Censorship Detachment, 민간검열지대)에게 조선인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관한 정보를 의뢰하고, 같은 날 DS(외교국) 총무과(Division of General Affairs) 핀(Richard B. Fin) 서기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해 문의하였다.

포크너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DS에 문의한 것은 당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가 애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CIE는 1946년 11월 5일, 재일한인의 집단 귀환 종료(1946년 12월)를 앞두고, 12월 15일까지 귀환을 종료할 것이며, 귀환을 거절하는 재일한인은 “합법적으로 수립되는 한국정부가 그들을 한국 국민으로서 승인할 때까지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

10) Memorandum from Theodore A. Faulkner to Liaison and Investigation Branch, Subj : Korean School Problem, 18 Jan. 1949 and Enclosures, KK/CIE-04224.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발표를 CIE와 DS는 11월 12일에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CIE나 DS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외국인의 법적지위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DS가 이를 제안하고 GHQ 내의 합의를 거쳐, 미국무부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sup>11)</sup> 한신교육사건 때 GHQ는 이를 근거로 재일한인에게 일본인교육을 강요하고 단속하였지만, 1949년 1월이 되자 사정이 바뀌어 갔다. 즉 1948년 8월에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주일한국대표부가 1948년 12월에 동경에 개설되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가 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다. GHQ의 결정대로라면, 공식적으로 출범한 한국정부가 재일한인을 한국국민으로 인정하면, GHQ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무부 및 GHQ가 결정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되면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게 일본의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을 강요할 수 없게 되고, 조선인학교는 각종학교로서 자유롭게 민족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포크너는 한국정부의 수립에 의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변화가 생기는데 대하여 그 담당 부서인 DS에 문의한 것이다.

포크너의 문의에 대해 핀은 재일한인의 지위는 한국정부 수립에 의해 외국인의 신분이 될지 모르나 재일한인에게 일본 법률을 적용하는 DS의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핀은 “CIE는 정환범(초대 주일한국대표부 대사—필자 주)에게 한국민(Korean nationals)의 일본 법률 복종에 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발할 것을 요구할 것을 고려해야만 하며”, 재일한인의 외국인으로서 지위가 확정되면, 재일한인이 자주권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정부당국은 예상되는 법적지위 변화에 관계없이, 일본의 법률을 강요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sup>12)</sup> 즉 핀은 GHQ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무부가 승인한 정책을 마음대로 무시하여, 한국정부 수립에 관계없이 재일한인을 일본국민으로 취급하

11)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254~259쪽.

12) Memorandum from Theodore A. Faulkner to Liaison and Investigation Branch, Subj : Korean School Problem, op. cit,

여 일본법을 강요해야 하며, 결국 일본의 교육법도 재일한인에게 여전히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핀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한국정부의 주권과 재일한인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친일적이면서도 반공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sup>13)</sup>

포크너는 1월 18일, 핀의 견해를 참고하여 첫째, 교육과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 학교문제를 조사할 것, 둘째, 오사카 군정팀은 오사카의 조련계 조선인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전해지는 파괴활동을 조사할 것, 셋째, 정 한국대사는 재일한인에게 일본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 넷째로 재일한인의 출판물을 검열받게 할 것 등을 교육과에 제안하였다.<sup>14)</sup>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를 조사해야 한다는 포크너의 구신은 받아들여져, 포크너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아마구치시에 가서 조사를 하였다. 당시 포크너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현지 점령군, 현청 관계자, 조련 및 조선인학교 관계자와 접촉을 하였다. 그리고 2월 17일자 장문의 보고서(이하「포크너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젯트(D. R. Nugent) CIE국장에게 제출하였다.

포크너는 보고서에서 조선인학교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고, 교원 중에는 공산당원이 있으며, 공산주의나 북한을 맹목적으로 선전하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인학교에서의 교육목표는 일본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혁명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심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과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미군정 하의 괴뢰정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조련계의 2개 초등학교는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고, 2,223명의 아동은 일본의 공립학교에 전학시킬 것, 조련 간부와 교사는 일본 법률 및 GHQ 지령

13)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610-623쪽.

14) Memorandum from Theodore A. Faulkner to Liaison and Investigation Branch, Subj : Korean School Problem, op. cit,

위반으로 강제 송환할 것, 문부성과 조련과의 5·5각서는 조련이 조선인학교의 대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고 한국대사에게 성명을 발표하게 할 것, 일본 전국의 조련계 초등학교의 공산주의 교과서를 파기시키고, CIE가 모든 조련계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전 검열할 것, 조선인학교로부터 조련사무소를 철거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프레스 코드 위반 유무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5)</sup>

### 3) 제8군의 조사결과와 의견

포크너 보고서를 접한 CIE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G2 간부와 협의하여 우선 현지 사정에 밝은 제8군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받아보기로 하였다. 우선 CIE는 2월 하순 제8군 군정부 사령관 쉐파드(W. P. Shepard) 대장과 협의를 하였다. 쉐파드 사령관은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 관련 보고가 군정관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며<sup>16)</sup>, 제8군으로서도 즉시 조사를 하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제8군의 수하부대인 제1군단 제24보병사단이 현지 조사를 하였다. 현지 조사는 제24보병사단장인 히긴스(Gerald J. Higgins) 준장의 지휘 하에 3월 28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조사기간 동안 CIE의 포크너도 현지에 머무르면서 현지 점령군 관계자 및 야마구치 현청 관계자와 접촉을 하였다.

15) Report from Theodore A. Faulkner to Chief, CIE, Subj : Report of Field Investigation of Korean Schools in Yamaguchi Prefecture, 12 Feb. 1949, KK/CIE- 04235.

16) Ibid. 예를 들어 2월 9일, 야마구치 군정팀 내에서는 아마구치현 소재 조선인학교의 사태는 이미 평화적인 일본 점령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혁명교육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인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Memorandum from Douglas G. O'Brien to CG, Yamaguchi Military Government Team, 9 Feb. 1949, Subj : Korean School). 야마구치 군정팀은 이를 2월 11일에 상부기관인 추고쿠(中国) 군정부에 보고하고, 조선인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일본정부가 강구하도록 상부기관이 지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Letter from Eugene J. McNamara to CG, Chugoku Military Government Region, 11 Feb. 1949, KK/CIE- 04269. 당시(2월 1일에서 10일) CIE의 포크너가 야마구치에 있었고, 포크너 보고서에서, 포크너가 접촉했던 자들의 명단에 오브라이언(O'Brien)이나 맥나마라(McNamara)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 보고서와 포크너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히긴스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제24보병사단의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즉 야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는 분명히 일본 법률과 점령당국의 지령에 위반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군정재판은 물론, 일본의 재판에 회부할 만큼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더 위험한 사태가 도래하고, '분명히 있을' 보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야마구치현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조선인학교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황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24보병사단은 4월 초에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첫째, 만약 상부기관이 승인한다면, GHQ의 지령이나 일본 법에 복종할 때까지 조선인학교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4월 12일 집행하도록 야마구치 현지사에게 지시할 것. 둘째, 이를 위해 2,000명의 국가지방경찰을 보강할 것. 셋째, 일본 경찰력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점령당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지사에게 알릴 것. 넷째, 일본 교육법과 점령당국의 지령에 위반한 재일한인을 체포하도록 지사에게 지시하고, 재일한인을 군사재판과 일본의 재판에 회부시킬 것. 그리고 제8군은 제24보병사단 사령부에게 SCAPIN 제212호(교원 및 교육관계자의 조사, 적격심사 및 증명에 관한 훈령, 1945년 10월 30일) 위반자를 군사재판에서 처벌할 권한을 부여할 것.<sup>17)</sup>

즉 히긴스 준장의 안은 상부가 승인한다면, 4월 12일 당장 야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에 대하여 강경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 포크너 보고서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포크너는 야마구치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24보병사단의 계획은 포크너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 같은 계획에는 다나카 현지사도 깊이 관여하였다. 다나카 현

17) Memorandum for C/S from D. R. Nugent, CIE, Subj : Korean problem in Yamaguchi Prefecture, 16 Apr. 1949, pp. 3~5, KK/CIE-04235.

지사는 2월에 포크너가 야마구치를 방문하였을 때, 자신은 애당초 조선인학교를 1948년 12월에 폐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력이 부족하여 포기하였고, 또한 독립 운동의 상징인 3.1절 이후로 폐쇄 시기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30일과 31일에는 히긴스 준장에게, 자신은 조선인학교 폐쇄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황태자의 야마구치 방문일(4월 7~10일), 공산당 기념일(4월 18일), 공산당 데모(4월 24일), 노동절(5월 1일)을 피할 것을 조언하기도 하였다.

제24보병사단의 보고를 받은 제1군단장인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은 4월 7일경, 제24보병사단의 계획에는 모두 동의하나, 현지점에서 조선인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획에서 제외시키도록 결론을 내렸다.<sup>18)</sup> 즉 쿨터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선인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를 받은 웨퍼드 사령관은 CIE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점령당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조선인학교 관계자를 군사재판이나 일본의 재판에 넘길 정도의, 그리고 조선인학교를 폐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법적 증거가 마련될 때까지, 조선인학교의 운영을 인정하고, 현상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동시에 웨퍼드 사령관은 조선인학교문제에 개입하면 당시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한일통상협정(4월 23일 체결) 체결에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야마구치 현지사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조치가 한일관계에 줄 영향에 대해서 배려를 구하였다.<sup>19)</sup>

18) Memorandum for C/S from D. R. Nugent, CIE, Subj : Korean problem in Yamaguchi Prefecture, 16 Apr. 1949, p. 5.

19) Ibid., p. 5. 당시 다나카 야마구치 현지사는 조선인학교의 폐쇄 그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조선인학교의 폐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였다.

### 3.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를 둘러싼 GHQ의 정책결정과정

#### 1) CIE와 G2의 결론과 관계부국회의(‘케이스 각서’)

조선인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던 포크너의 입장에서 보면 컬터 소장이나 웨퍼드 사령관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4월 11일 동경으로 돌아온 포크너는 뉴젠트 CIE 국장에게 4월 12일자 ‘야마구치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조선인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경고만 하면, 첫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되어 점령군과 일본정부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조선인초등학교에서의 파괴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둘째, 야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 교사는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일본인학교는 한인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방과 후 한글 교육을 위한 한인 시간강사의 채용을 다나카 지사가 약속했다는 점, 셋째, 문제의 핵심은 인공기 계양이나 교사 자격이 아니라, 조선인학교에서의 공산주의교육이라는 점.<sup>20)</sup>

즉 포크너의 의견은 히긴스 준장과 웨퍼드 사령관이 법적 근거를 운운하나, 조선인학교에서 조련이 공산주의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를 즉시 폐쇄하지는 것이었다. 포크너에게는 민족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식이나 현실적 배려는 전혀 없었다.

당시 포크너가 조선인학교의 폐쇄를 고집하고 나온 것이 친일파로 알려진 뉴젠트 CIE 국장을 비롯한 CIE 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 그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것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지만, GHQ 전체의 과민한 반공정책이 포

20) Report from Theodore A. Faulkner to Chief, CIE, Subj : Report of Field Trip to Yamaguchi Prefecture, 12 Apr. 1949, pp. 7-8, KK/CIE-04260. '네번째' 의견도 있으나,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해독 불가.

크너에게 투영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한신교육사건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조선인학교의 민족교육을 애당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CIE의 구성원으로서, 포크너가 반공교육을 빌미로 조선인학교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 한신교육사건이 발생하자, GHQ는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인학교에서의 공산주의교육이 마치 그 원인인 것처럼 선전하였다.

아무튼 포크너는 조선인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4월 13일 G2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4월 14일에 자신의 출장 보고서를 G2에도 보냈다.<sup>21)</sup>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5일(16일?) CIE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에 대하여 G2와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CIE와 G2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는 일본의 법률을 많이 어기고,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제24보병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법적인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현지사가 현재의 조선인학교 폐쇄와 법률에 위반한 관계자를 체포·처벌하는 지령을 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는 확실히 얻을 수 있다”<sup>22)</sup>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현지사가 조선인학교의 폐쇄와 관계자 체포를 지시하게 되면, 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일본 경찰이 이 소동에 대응할 수 없을 때에는 점령당국이 동원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조치가 GHQ 내에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CIE와 당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G2의 결정은 GHQ의 정책결정 시스템과 분위기로 보았을 때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후 그들의 과제는 자신들의 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것만 남았다.

21) Check Sheet from CIE to G-2, CIS, Subj : Report on Korean Schools, 14 Apr. 1949, KK/CIE-04261.

22) Memorandum(Staff Study) for C/S from D. R. Nugent, CIE, Subj : Korean Problem in Yamaguchi Prefecture, 16 Apr. 1949, p. 6, op. cit.

뉴젯트 CIE국장은 그간의 경과와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한 4월 16일자 각서(Memorandum=Staff Study)<sup>23)</sup>를 GHQ 아몬드(Edward M. Armond) 참모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sup>24)</sup> 그리고 아몬드 참모장에게 뉴젯트는 첫째, GHQ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에 대하여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을 제8군사령관에게 알릴 것, 둘째, 이 결정은 일본정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 조치를 법적 근거에 기초해 실행하고, 일본정부에 의한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조치 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sup>25)</sup>

이 보고를 실제로 받은 것은 폭스(Alonzo P. Fox) 부참모장(GHQ)인데, 그는 이 시점에서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책이 취해져야 하며, 아마구치현은 이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기에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 부참모장은 4월 중순 히키(Doyle O. Hickey) 부참모장(Far East Command), 위로비(Charles A. Willoughby) G2부장, 마리스(Ward H. Maris) G3부장, 브래턴(R. S. Bratton) 대령, 뉴젯트 CIE국장, 코빌(Cabot Coville) DS부국장 그리고 부참모장 부관인 케이서(G. V. Keyser 행정관계담당) 준장 등을 불러 관계부국회의를 개최했다.

케이서 부참모장 부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4월 19일자 각서(이하 케이서각서)를 아몬드 참모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에 대하여 강경책을 강구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점령군의 준비와 관련해 첫째, 아마구치 현지사는 국가지방경찰의 지원이 필요하고, 일본경찰은 장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신속하게 동원된다. 둘째, 제8군사령관에게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권

23) Ibid. 뉴젯트 국장은 이 각서를 '간부연구'(Staff Study)라고 명명하였다.

24) Check Sheet CIE to CS, Subj : Korean Problem in Yamaguchi prefecture, 16 Apr. 1949, KK/CIE- 04235.

25) Ibid, pp. 2-3.



한을 부여한다. 즉 한신교육사건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점령군이 출동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북조선기의 계양을 금지하는 지령을 GHQ가 정식으로 발할 것. 둘째, 한국대사는 재일한인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로서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을 지지할 것. 셋째, 공식적인 한국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조련이 서명자가 되어 있는 5·5각서를 파기할 것. 넷째, 조선인학교가 법률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성명을 CIE가 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8군사령관에게는 야마구치 현지사에게 적당한 시기에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역에서의 비상사태선언을 수상에게 요청하는 재량권이 야마구치 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sup>26)</sup>

즉 관계부국회의에서는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조치는 일본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되, 일본정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GHQ가 나서서 조선인학교의 불법성에 대하여 성명 등을 발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점령군이 대기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 2) DS의 제안과 정환범 대사의 입장

케이스각서를 수취한 아몬드 참모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DS에 요청하였다. 외교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DS에 문의한 것이다. DS는 4월 20일자 체크시트<sup>27)</sup>에서 케이스각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DS는 케이스각서에 제안된 조치를 실행하게 되면, 재일한인이 저항하여 갖

26) Memorandum for C/S from George V. Keyser, Subj : Korean Problem in Yamaguchi Prefecture, 19 Apr. 1949, Enclosure No. 3 to Despatch No. 351 From USPOLAD for Japan, 894.42/5-3149, Record Group 84, *Japan (Tokyo), Office of the United Political Advisor for Japan,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45-1952*, Washington National Records Center, Suitland, MD.

27) '체크시트'라는 것은 GHQ의 참모부 및 막료부의 각 부국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사교환을 위해 공식적으로 주고받던 문서를 말한다.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지만, 재일한인을 일본 법률에 복종시키고,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일본경찰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에서 케이사각서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단지 DS는 케이사각서의 실행을 통해 재일한인의 공산주의 활동을 저지하고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DS가 CIE와 함께 한국대사와 협의하여 “한국대사가 재일한인에 대해서 일본 법률의 복종을 엄격하게 명하도록”<sup>28)</sup> 설득하여야 하며, 대사의 성명은 계획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DS의 편 서기관은 이러한 의견을 이미 1월 17일에 포크너에게 개진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CIE 뉴젯트 국장은 자신이 승인을 요청한 4월 16일자 각서 그리고 케이사각서를 참모장이 허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지, 4월 23일에 포크너 등의 부내 관계자를 불러, 조선인학교의 불법 상황, 한국대사의 성명, 조련을 인정한 5·5각서 파기, 조선인학교와 관련한 민단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sup>29)</sup> 또한 당시 아마구치 현지 점령군도 현지 경찰과 조선인학교 폐쇄를 대비하여, 경찰 동원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sup>30)</sup>

한편 아몬드 참모장은 뉴젯트의 기대보다는 서서히 움직였다. DS의 의견을 확인한 아몬드 참모장은 5월 초에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 DS국장과 폭스 부참모장과 회의를 하였다. 아몬드는 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5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부참모장에게 내렸다.

28) Check Sheet from DS to C/S, 20 Apr. 1949, Subj : Tollbooth, Enclosure No. 4 to Despatch No. 351 from USPOLAD for Japan, op. cit.

29) Memo for the Record by Theodore A. Faulkner, Subj : Korean School Problem, 23 Apr. 1949, KK/CIE-04237.

30) Memo for Record by Harold Mulbar(Police Administrator), Subj : Conference-Yamaguchi Korean School Problem, 20 Apr. 1949, KK/G2-00546.

첫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무리하게 일본경찰이나 점령군을 동원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볼드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일한인이나 재일한인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 성명을 방학 동안 한국대사에게 하게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DS가 한국대사와 협의한다. 또한 협의를 통해 일본의 법률 적용과 관련해 현안이 되고 있는 조선인 학교나 법적 지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셋째로, 케이사각서에 의해 제안된 발본적 조치는 그 후에 취하며, 그때는 일본정부나 점령군에 저항하는 재일한인을 갑자기 지지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의 협력을 반드시 받아 둔다.<sup>31)</sup>

즉 아몬드 참모장은 DS의 제안을 받아들여, 케이사각서를 실행하기 전에 주일한국대표부와 협의하여 재일한인이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고, 또한 학교 문제나 법적지위도 정 대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가도록 지시한 것이다.

DS는 5월 4일자로 부참모장으로부터 한국대사와 협의를 하도록 정식으로 지시를 받았다. 그에 따라 DS(휴스턴 부국장과 핀 서기관이 출석했다고 생각되어짐)는 5월 중순경 정환범 대사(2대 주일한국외교대표부 대사)와 회담을 가졌다. DS측은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 문제의 개요와 정 대사에게 성명을 요구하는 편이 작성한 “조선인학교문제”(5월 16일)<sup>32)</sup>라는 문서를 정 대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DS측은 재일한인에게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정 대사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조선인학교를 둘러싼 GHQ의 입장에 이해를 보이긴 했으나, 자신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였다.<sup>33)</sup> 당시 정 대사는 한국국민인 재일한인을 연합국민으로서 취급해야만 한다는 장문의 서

31) Check Sheet from C/S to DC/S, SCAP, 3 May 1949, Subj : Korean Problem in Yamaguchi Prefecture, Enclosure No. 5, from USPOLAD for Japan, op. cit.

32) "Question of Korean Schools" prepared by R. B. Finn, May 16, 1949, KK/GS-01611.

한(5월 3일자)을 DS에 막 보냈던 참이었다. 이 서한에서 정 대사는 DS에 대하여 해방된 재일한인은 당연히 연합국민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 대사가 재일한인에게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고 재일한인의 민족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그러한 성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도 없었다.

정 대사의 답변이 늦어지는 가운데, DS는 부참모장에 대한 5월 28일자 체크 시트에서 정 대사와의 회담 내용을 보고하였다. DS는 정 대사로부터의 대답은 아직 미정이지만, DS의 권고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단, 정 대사가 재일한인의 권익에 반하는 입장에서 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정 대사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암시하였다.

이것은 DS의 제안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신들의 제안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것인지, DS는 한국정부의 동정적인 태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국대사와 협의를 더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리고 DS는 부참모장이 요구도 하지 않은 조선인학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제안을 케이사각서의 제안이라며 부참모장에 대한 참모장의 5월 3일자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조치라고 DS는 스스로 자리매김했다.

첫째,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선인학교에 대한 준비조치는 학교가 휴교하는 여름방학 사이에 행하는 것이 득책이다. 둘째, 이 기간 중에 일본교육기관에 지령을 발하여, 일본교육법에 재일한인이 복종할 것을 발표시킨다. 셋째, 동종의 발표를 지방점령당국도 한다. 넷째, 한국대표부로부터 재일한인사회에 대한 호소나 성명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DS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첫째, 본 문제에 대한 재일한인의 의무와

---

33) Check Sheet From DS to DC/S, Subj : Korean School in Yamaguchi Prefecture, 28 May 1949, Enclosure No. 6 to Despatch No. 351 from USPOLAD for Japan, op. cit.

점령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둘째, 법률에 위반하고 있는 조선인학교와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본정부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셋째, 케아서보고서에서 지적된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sup>34)</sup>

### 3) 뉴젯트 국장의 최종제안

조선인학교 문제를 관장하고 있던 CIE의 뉴젯트 국장은 6월 13일 체크시트를 폭스 부참모장에게 제출하여, DS가 제안한 모든 조치의 부적절함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GHQ가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명확한 지령을 일본정부에 발하지 않는 한 일본 법률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발표에 재일한인의 반항이 예상된다는 것, 둘째, 현지 점령군도 GHQ로부터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지령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 셋째, 한국대사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어렵고,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조련계 학교는 그의 성명을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뉴젯트는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먼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GHQ의 입장을 성명으로 분명히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일본정부나 지방점령당국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가 지방점령당국과 일본정부의 협력 하에서 취해져야만 하며, 조련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에 의한 반항이 예상되지만, 일본의 경찰력만으로는 사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제8군은 위험지역에 파병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권고하였다.<sup>35)</sup> 즉 뉴젯트는 DS가 주장하듯이, 일본정부가 입장을 표명하거

34) Check Sheet From DS to DC/S, Subj : Korean School in Yamaguchi Prefecture, 28 May 1949, Enclosure No. 6 to Despatch No. 351 from USPOLAD for Japan, pp. 1~2.

35) Check Sheet from CIE to DCS(SCAP), Subj : Korean School Situation, 13 June 1949, KK/GS-01611. '포커너 보고서'에서부터 뉴젯트 국장이 부참모장에게 6월 13일자 체크시트를 제출하는 과정까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로버트 리켓트, 「在日朝鮮人の民族自主權の破壊過程」, 255~264쪽을 참조했다.

나, 한국대사의 지원을 기대하거나 하지 말고, 관계부국회의(케이스각서)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자고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를 GHQ가 명백히 해야만 한다고 하는 뉴젠티의 요구는 부참모장의 입장에서부터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GHQ 내에서는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GHQ 내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8월이 되어서였다. GHQ와 미국무부가 정한 대로라면 한국정부가 재일한인을 국민으로 인정하면, 재일한인을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들이 정한 결정(1946년 5월)이었지만, DS는 이러한 결정을 멋대로 번복하여 재일한인을 여전히 일본국민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가지고 관계부국간에 협의가 길어지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GHQ는 1949년 8월 3일에 재일한인을 점령기간 동안 한국정부 수립에 관계없이 일본국민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sup>36)</sup>

이무튼 재일한인의 법적지위가 불명확한 6월의 당시 상황 속에서도 GHQ와 지방점령당국은 뉴젠티 국장의 주장에 끌려가듯이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조치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즉, GHQ의 지시에 따라 제24보병사단은 야마구치현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조치에 대비해, 완전무장 병력을 파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 점령군의 파견은 일본경찰에 의해 질서가 확보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행해질 예정이었다.<sup>37)</sup>

#### 4) GS의 개입

하지만 4월의 관계부국회의에서 제외되어 있던 GS(민정국)가 CIE 주도의 강경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갑자기 제시했다. GS 공무과(Public Affairs Division)의 헤

36) 金太基, 『戰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610~650쪽.

37)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Osborne I Hague, Subj : Proposal to Close Korean Schools in Yamaguchi Prefecture, 6 July 1949, KK/GS-01611.

이그(Osborne I, Hague) 과장은 케이사서각서에서부터 뉴젠티 국장의 부참모장에 대한 각서까지의 일련의 문서를 검토했다. 이를 기초로 GS는 뒤늦게나마 부참모장 앞으로의 7월 8일자 체크시트에서, 조선인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GHQ가 지령을 내리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점령당국의 직접적 관여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GS는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에는 동의하나, 이것은 점령당국이 처음부터 직접 관여해야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만약, 일본정부의 손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 시점에서 점령당국이 개입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가 동원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경찰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편, 이 각서(부참모장에 대한 뉴젠티각서—필자 주)가 제안하듯이, GHQ 특히 군 규모의 직접적인 관여는 국내에서의 권위와 외국에서의 위신이 심하게 약화되어 온 일본정부의 행정능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한 조치는 사실상, 시계 바늘을 패전 초기로 돌려놓는 것이다.<sup>38)</sup>

즉, 반공의 방벽으로서의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가 미국의 입장에서 높아지고, 게다가 사실상의 강화로 향하는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GS는 일본정부가 점령군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본 국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GS의 입장은 9월 8일 일본정부에 의해 집행된 조련 해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조련 해산과 관

38) Check Sheet from GS to DCS, Subj : Korean School Situation, 8 July 1949, KK/GS-01611.

련해 GHQ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기부터 GHQ 특히 GS는 재일한인문제에 GHQ가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피해,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일한인을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나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GHQ는 일본정부를 아무렇게나 홀로시키기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본정부의 홀로하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때문에 GS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첫째, 조선인학교 문제에 대한 GHQ의 조치는 문부성 혹은 문부대신에 대한 비공식적인 어드바이스, 즉, 점령당국이 조사한 결과, 조선인학교가 5·5각서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조선인학교가 공산주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하고, 둘째, “문부성은 일본정부에 의해 결정된 적절한 해결책에 대해 본 사령부의 조언을 구할 것”, 셋째, 본 사령부가 조선인학교 문제를 일본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제8군사령관에게 알릴 것.

즉 케이서각서와 GS 제안의 차이점은 전자는 GHQ가 공식적으로 주도하고, 일본정부가 집행하되, 만약의 사태에 점령군이 나선다는 것이 수순이었다고 한다 면, 후자는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주도하고, GHQ가 비공식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만약의 사태에 점령군이 나선다는 것이었다. 결국 GHQ는 GS의 제안에 따라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4. 제2차 조선인학교폐쇄·개조 조치

##### 1) GS와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학교 폐쇄 준비과정

조선인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는 이미 GHQ 내에서 7월경에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폐쇄 조치가 바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인학교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련에 대한 해산을 GS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련 해산의 시기를 기능하던 GS는 8월에 조련 해산을 법무부에 지시하고, 마침내 법무부에 의해 9월 8일 조련 및 그 산하단체가 해산되었다.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가 그 사이에 취해지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조련 해산을 계획하고 있던 GS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정부가 자력으로 조련을 해산할 수 있으면, 조련이 지탱하고 있는 조선인학교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용이하게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GHQ 내에서는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GHQ의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GHQ에 의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가 다시 결정된 것은 8월 3일이며, 그 내용은 재일한인을 계속해서 일본국민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문부성은 조련의 해산과 동시에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부성은 애당초 GHQ가 폐쇄의 대상으로 하고 있던 아마구치현의 조선인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조련계의 조선인학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인학교를 지탱하고 있던 조련이라는 전국적인 단체를 일본정부가 자력으로 해산시켰기 때문에,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에 GS와 협의가 있었는지, 문부성은 9월 19일에 조선인학교에 관한 문부성의 대책안(통첩안)을 가지고 GS를 방문하여 동의를 요청하였다. 문부성이 CIE가 아니라 GS를 방문한 것은, 전술하였듯이 GS가 7월 8일자 체크시트를 부참모장에게 제출한 이후, GS가 조선인학교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일 GS를 방문한 것은 이토 히데토(伊藤日出登) 문부(사무)차관, 구보타 후지마로(久保田藤麿) 관리국장, 데라다 다케오(寺西たけお) 연락과장 등 3명이었

다. 문부성 관료가 지참한 정책안은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련 해산지정의 이유가 점령통치에 반항하는 폭력적 단체였다는 점에서, 최근 해산이 지정된 조련의 그 산하 학교에 대해서도, 인적, 물적 그리고 사상적인 것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조련의 영향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sup>39)</sup>

그리고, 조련의 영향력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조련에 의해 설립된 조선인학교를 폐쇄하고, 조선인학교에서 조련 관계자를 추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었다.

GS 집행관(Executive Officer) 네이피어(Jack P. Napier) 과장은 이러한 문부성의 대책안은 조련과 같은 폭력집단과 같은 선상에서 조선인학교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기관은 이른바 단체해산을 지령한 SCAPIN 제548호(정당, 정치 결사, 협회 및 기타 단체의 폐지에 관한 훈령)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네이피어는 조선인학교에 대한 문부성의 조치 그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문부성이 점령군의 지령에 의지하지 않고, 일본의 교육법에 조선인학교가 위반한 것만을 전면에 내세워 조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네이피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문부성의 조치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a. 조선인학교의 문제와 조선인학교가 일본교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

39) Draft, no date, Subj : Policy for the Disposition of Korean Schools, KK/GS-04265. 이 문서는 「朝鮮人学校に対する措置について」(文管庶第69号, 1949年10月13日)의 초안임.

- b. 일본에 있는 조선인학교는 일본인학교처럼 일본의 법률과 일본의 학교교육 법이 적용되며, 그 취급은 너무 관대해도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된다.
- c. 일본정부는 일본인학교와 같이 이들 학교에 대해서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믿어도 좋다. 왜냐하면, 조선인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권위는 오늘날 패전 시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런 네이피어의 비공식적 입장 표명은 앞에서 소개한 GS 부참모장에 대한 7월 8일자 체크시트의 제안에 근거해서 나온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네이피어 장은 조련 해산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다.

GS로부터 실질적인 승낙을 얻은 문부성은 그 주된 대상을 조련계 조선인학교라고 하면서도, 조련계의 조선인학교만을 상정해서 만든 대책안(통첩안)을 민간단계까지 포함한 조선인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편파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인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는 먼저 내각결정의 형식으로 행해져, 요시다(吉田茂) 내각은 10월 12일, 조선인학교를 일본의 법률에 따르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sup>41)</sup> 이 결정을 받아 문부성과 법무부는 10월 13일,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라는 통첩을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사 앞으로 발하였다. 통첩에서 문부성은 “조선인학교의 취급 방침은 (중략) 그 ‘5·5 각서’ 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반드시 준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준수시킬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재일조선인연맹의 해산지정이 행해지게 됨에 따라, 이에 일본의 법령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엄정하게 준수시킬 필요가 있다”<sup>42)</sup>라는 기본자세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조선인학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하였다.

40) GS, Memorandum for Major Napier, 20 Sep., 1949, Subj : Action to be Taken by Japanese Government Agencies in Regard to the Korean Schools, KK/GS- 04265.

41) 山口県文書館 編, 『山口県政史 下』, 山口県, 1971, 1073쪽.

1.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기타 교육관계법 및 법령에 근거해 행하는 감독청의 명령을 준수시킬 것.
2.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또는 문부성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선어, 조선의 역사 등에 대해 조선인 독자의 교육을 할 경우의 도서는 소정의 인가를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준수시킬 것.
3. 교육면에서 구 조선인연맹의 주의, 주장, 행동을 선전, 보급 또는 지지하는 것과 같은 일체의 경향을 불식시킬 것.
4. 학교 시설을 구 조선인연맹계의 회합과 그 외에 이용하게 하지 말 것. 또한 학교교육법 제819조의 규정을 준수하게 할 것.
5. 무인가학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속을 거쳐 인가를 받게 할 것.
6. 구 조선인연맹의 본부, 지부 등이 설치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설치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히 폐교가 되는 것으로 처치할 것.<sup>43)</sup>

또한, 학교관리조합, 학교경영의 재단법인 등 학교관계단체의 주요 간부 중에서 구 조련 관계자를 추방하고, 구 조련 관계자를 그 구성원의 4분의 1을 넘기지 않게 하는 등, 구 조련 관계자에 의한 조선인학교의 경영을 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 및 구 조선인연맹의 해산에 따라 당연히 폐교가 되는 학교 및 사실상 경영이 곤란하게 되는 학교에 재학하는 아동,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를 가능한 한 공립학교에 수용하도록” 사후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sup>44)</sup>

마침내 문부성은 10월 19일, 조선인학교가 5·5각서의 원칙을 무시하고, 조선인학교의 설립주체를 재단법인화한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현존하는 조

42) 外務省政務局特別資料課, 『在日朝鮮人管理重要文書集』, 東京: 湖北社, 1978(자료를 취합하여 출판), 130쪽.

43) 外務省政務局特別資料課, 『在日朝鮮人管理重要文書集』.

44) 『毎日新聞』, 1949年 10月 20日.

선인학교는 대부분 지난번 점령군에 대한 반항 등의 이유로 해산된 조련 산하조직이라고 보아야만 하며, 그 간부, 조합원 등도 대부분 조련의 간부 구성원이다”<sup>45)</sup>라는 것을 지적하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조선인학교 측에 대해서 조선인학교의 폐쇄 및 개조를 지시하였다

이른바 이 “제1차 조치는, 10월 19일 오전 8시를 기해, 조련경영학교라고 간주되는 92교(초등학교 86교, 중학교 4교, 고교 2교)에 대해서 폐쇄를 통고함과 동시에, 다른 245교(초등학교 223교, 중학교 16교, 고교 6교)에 대해서, 학교 개조(2주간 이내에 사립학교 신청수속을 받을 것)를 권고하였다.”<sup>46)</sup>

## 2) 정 대사의 반발과 DS 및 CIE의 태도

조선인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21일에, 문제의 조선인학교는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지만, 사실을 확인해서, 일본정부 혹은 GHQ가 재일한인에게 차별을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대한 문제로 여기겠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sup>47)</sup>

한편, 일본정부의 조치를 사전에 통고받지 못했던 정 대사는, 서둘러 10월 21일에 시볼드 DS국장을 방문해 항의를 하였다. 그것은 일본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일한인과 관련된 중요한 조치를 한국대사와 사전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행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즉, 정 대사는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통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정부에게 보고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대표부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45) 坪井豊吉, 『在日同胞の動き』(『在日朝鮮人運動の概況 — 法務研究報告書』第46集 第3号, 1957), 東京: 自由出版社, 1975, 288쪽.

46) 小沢有作, 『在日朝鮮人教育論 歴史編』, 264쪽.

47) Incoming Telegram from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 1304, 21 Oct. 1949, *U. S. State Department Decimal File No. 894.42/10 - 2149*, Washington National Records Center, Suitland, MD.

행위가 한국대표부를 무시하고 행해진 것이라면, 재일한인 문제 해결을 하나의 직무로 하고 있는 한국대표부가 일본에 개설된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sup>48)</sup>

그리고 정 대사는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을 설명하고, 조선인학교 문제에 관련해 재일한인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폐교 지정을 받은 조선인학교의 접수를 한국대표부가 DS에게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정 대사는 사전에 연락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문부성이 행한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조치를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조선인학교가 조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GHQ가 조선인학교의 공산주의교육을 문제시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대사 자신의 관심은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 그 자체보다도, 해산된 조선인학교를 한국대표부가 접수하는 것이었다.

정 대사는 DS앞 10월 25일자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 첫째, 일본정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58개교는 한국대표부가 이들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6,000명의 학생을 위해 새롭게 개교하고 싶으니, DS가 일본정부에게 이들 학교를 한국대표부에게 양도하도록 설득할 것, 둘째, 문부성은 조선인학교에 대해 2주일 이내에 개조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그 기간에는 문부성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어려우니 기한을 조정하도록 DS가 문부성에 요청할 것.<sup>49)</sup>

정 대사의 서한을 받은 DS는 개조 기한을 조정하라는 요청에는 동정을 보여

48) Memorandum for CS prepared by W. J. Sebald, Subj : Closure of Korean Schools, 20 October 1949, Enclosure No. 3 to Despatch No. 734, 21 Oct. 1949 from USPOLAD for Japan, op. cit.

49) Letter from Korean Diplomatic Mission in Japan to DS, 25 Oct. 1949, [350-Political Affairs-Korea], RG 84, Box 84, POLAD (Tokyo)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49, Washington National Records Center, Suitland, MD.

도, 한국대표부가 폐지된 조련계 학교를 접수해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았다. 즉, DS는 이 문제에 관한 CIE의 견해를 묻기 위해, CIE에 10월 28일자 체크시트를 보냈다. 그리고 DS는 “DS는 이 요구를 지지하지 않으며, 재일외국인사회가 자금을 전부 조달한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외국정부 혹은 그 대표부의 관리 하에 놓여야만 한다는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sup>50)</sup>며 한국대표부가 조선인학교를 접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CIE에 밝혔다.

조선인학교의 개조 기한(11월 2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DS는 참모장의 허가를 얻어, 먼저 11월 1일자 서한을 일본정부에 보냈다. 이 서한에서 DS는 2주간의 개조 기한이 짧다는 점 대사의 지적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만 하였다. 폐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sup>51)</sup>

한편, DS 앞 10월 25일자 서한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던 정 대사는 2주간의 개조 기한(11월 2일)이 다가왔기 때문인지, 10월 31일 선약 없이 DS를 방문하였다. 정 대사를 응대할 것은 시볼드 국장이 아닌, 휴스턴 DS 부국장이었다. 정 대사는 여기서 당연히 25일부 서한에 대한 답장을 요구했지만, 11월 1일에 DS가 일본정부 앞으로 위의 서한을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월 31일에는 아직 정 대사의 서간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결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은 정 대사의 서한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할 수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정 대사는 휴스턴에게 일본정부의 조치가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모색해 온 자신의 노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아무 것도 들을 수 없었다.<sup>52)</sup>

50) Check Sheet from DS to CIE, Subj: Korean Mission Requested for Action on Korean School Problem, 28 Oct. 1949, *POLAD (Tokyo)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49*.

51) Letter from DS(Cloyce K. Huston) to Japanese Government, 1 Nov. 1949, *ibid.*

52) Memo of Conversation by Huston, Subj: Closing of Korean School, 31 Oct., 1949, *ibid.*

정 대사의 서한에 대해서 DS는 10월 28일자 체크시트에서 CIE에 그 의견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CIE의 회답은 11월 2일자로 DS에 전달되었다. 정 대사의 서한에 대한 CIE의 입장은 지극히 강경하였다. 조선인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CIE가 직접 관여한 내력도 있어, CIE는 오로지 일본정부 입장에서 있었다. CIE는 그 회답에서, 정 대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본건조치는 일본정부의 독자적 결정에 기초해 행한 것이며, 문부대신으로서 한국대사에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알려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조 기한의 연장도 일본정부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며, 그리고 폐지된 학교의 양도문제의 시비도 DS의 견해에 찬성한다고 하였다.<sup>53)</sup>

CIE의 답장이 일본정부를 의식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한국과 일본이 정상적인 외교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일본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강구할 때, 한국대표부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아직 주권이 없고, GHQ가 그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애당초 GHQ가 한국대표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라도, 미국정부가 합법성을 인정하는 한국정부의 한국대표부에 대해 GHQ는 사전에 관련 조치에 대해 협의를 했어야 했다. 즉, 문부성과 사전에 접촉하고 있었던 CIE는 일본정부의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일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한국대표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수순이었다. 그러나 CIE는 DS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선인학교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교육법에 따르도록 성명을 발표하도록 정 대사에게 요청할 때 이외에는, 한국대표부라는 존재를 전혀 시야에 넣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개조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도, 2주간이라는 기한이 조선인학교가 실제로 개

53) Check Sheet from CIE to DS, 2 Nov. 1949, Subj : Korean Mission Requested for Action on Korean School Problem, *ibid.*



조하기에 가능한 기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CIE는 객관적으로 대답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오로지 일본정부의 판단에 맡겨야만 하는 문제라고 하고, 일본정부의 조치에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폐쇄된 조선인학교가 한국대표부에게 양도되어야만 하는지 어떤지는 별개로 두고서라도, 한국대표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DS나 CIE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시설의 귀속문제에 대해 한국대표부와 협의하는 것이 수순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고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당시 CIE는 정 대사의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아 주는 역할을 다하면서, 일본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GHQ에게 한국대표부는 외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당시 한국정부가 GHQ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신생의 약소국이었던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었으며, 당시의 한미관계를 엿보게 하는 것이었다.

DS는 CIE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 대사에게 11월 10일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는 우선, 개조 기한에 관하여 GHQ가 일본정부에게 그 기한을 조정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예고한 기한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폐교된 학교의 양도에 관해서도, 그러한 조치는 GHQ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점령정책에도 모순되며, 일본 법률 하에서 일본정부가 처리해야만 할 문제라고 하였다. 사전에 정 대사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조치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조치는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사전에 알릴 상황은 아니었다고 변명하였다.<sup>54)</sup> 결국 정 대사의 요구는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본정부의 모든 조치는 GHQ에 의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54) Letter from DS to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in Japan, 10 Nov. 1949, *ibid.*

### 3) 한국에서의 반응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 대상이 조련계 조선인학교라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정부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문교사회위원회는 대책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10월 29일에 열린 제5회 임시국회(제27차 회의)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영준(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 의원은 “미국 ‘맥아더’ 사령부와 일본인 사이에 재일조선인은 어떠한 법이든지 일본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육법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잘못 인식한 것으로 그러한 법은 세계에 없는 법입니다”라고 비판하고, 법적인 문제가 원인인 조련의 공산주의교육이 원인인 간에, 조선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8,829명의 교육 문제가 걸려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일동포교육상황조사위원회’를 국회가 파견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의 권태희 의원(무소속)은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학교 폐쇄에 인공기를 내건 구 조련 관계의 학교만이 아니라 민단계의 9개교도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문교부의 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문교부에서는 재일동포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한 성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어보아야 외무부를 통해서 듣는 것뿐이라고 막연한 대답뿐입니다. …… 이야기를 듣건대 많은 동포의 자녀들이 조선인연맹이 세운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우리 거류민단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한 동포의 자녀들이 일본국민을 양성하는 일본인소학교에서 일본말 배우고 일본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sup>55)</sup>

55)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제28호), 1949년 10월 29일, 533~534쪽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권 의원은 민족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사위원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계로 친일 경력이 있는 윤치영(한국민주당→대한국민당) 의원은 일본정부가 일본의 교육법을 재일한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국제법상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하등의 근거와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재일한인은 일본의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조선의 언어, 역사, 지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일본정부에 사전의 연락을 얻어서”, “야학을 통해” 행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외국에서 하는 전례예요”라고 단정짓는다. 그리고는 조사위원단을 파견하는 것은 “국회가 무지를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공격하였다. 나아가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민족독립운동가 출신의 신익희(민주국민당) 국회의장도 조사위원단 파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조현영(한국민주당→무소속) 의원은 조선학교의 공산주의교육을 문제시하였다. 정부가 조선인학교의 공산주의교육을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고, 일본정부의 조선인학교에 대한 조치만 문제 삼지 말고, 폐쇄된 조선인학교에 대해서 문교부는 교육방침을 명확히 내세우고, 그 학교들을 지도해 나가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강경파와 소극파의 의견이 부딪치는 가운데, 조영규(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 의원이 조선인학교 문제는 국회가 아직 움직일 단계는 아니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다루어야 한다며, 조선인학교에 관한 조사를 정부에 의뢰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조 의원의 제안에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국회는 외무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하는 의원 등에 의해,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한 문교사회위원회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당시의 국회 의원의 지적인 수준과 민족의식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외

무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나서 GHQ의 일본점령이 종료하기까지, 재일한인의 교육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일은 없었다. 권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민족 학교에 가고 싶으나 총련 산하 조선학교에는 가기 싫고, 민단체학교는 시설이 부족하여 들어 갈 수 없어, 결국 많은 재일한인들이 일본인학교에 들어가는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4) 해산·개조조치 후의 민족교육

일본정부는 10월 19일의 제1차 조치에 이어 “11월 4일 제2차 조치로서, 앞서 개조권고를 내린 학교 가운데, 이에 응하지 않는 120여 개의 학교는 자동적으로 폐쇄될 것이라고 하고, 한편 신청수속을 한 128개교에 대해서는 문부성에서 일괄 심사해서, 백두학원(오사카, '중립'계)이 경영하는 초·중·고 3교를 사립학교로서 인가한 것 이외에는 모두 불인가하여 폐쇄를 명하였다.”<sup>56)</sup>

조선인학교에 대한 강경조치에 대하여, 당시 대부분의 일본국민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노동조합 등의 진보세력도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오자와 유사쿠는 “일본사회의 교육분야에서도 민족교육의 자유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물며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일본국민이 조선인의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한다는 발상과는 인연이 멀었다. (중략) 따라서 일본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일조선인은 거의 자력으로 조선인학교 문제를 정치적·치안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체질을 갖고 있는 정부, 자치체에 항의, 교섭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sup>57)</sup>

당시 일본 언론도 일본의 교육법을 지키지 않고 조련계가 경영하던 조선인학

56) 小沢有作, 『在日朝鮮人教育論 歴史編』, 265쪽.

57) 상동, 275-276쪽

교 폐쇄는 당연하다는 듯이, 폐쇄조치의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을 동원한 강제 폐쇄조치에 대하여 재일한인 측 특히 구 조련 측은 활동 모체가 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학교가 위치한 지방에 따라 관계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은 가지각색이었다.

처음부터 재일한인의 공산주의교육을 둘러싸고 문제의 발단이 된 아마구치 현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을까. 아마구치현은 문부성이나 법무부로부터의 통첩에 따라, 10월 19일 오후 3시를 기해, 조련계 조선인학교에 학교폐쇄와 재산 접수 통지서를 시달하였다. 뒤이어 10월 21일, 아마구치현 교육위원회는 각 시정촌(市町村)에 대해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한인학생을 해당 시정촌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는 수속을 취하도록 재일한인에게 고시를 내릴 것을 지시하였다. 재일한인 측은 재일한인 자제를 한 학교에 일괄 수용하는 것을 희망하여, 민족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요망했지만, 아마구치현 교육위원회는 학구제를 무시하는 일괄 수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였다. 학교폐쇄 당시, 아마구치에 의무교육대상의 재일한인은 초등학생 4,739명, 중학생 830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의 공립 초, 중학교에 이미 취학해 있던 학생은 초등학생 2,114명, 중학생 277명이었다. 따라서 그들을 제외하고 조선인초등학교에 취학해 있던 2,625명, 중학교 553명이 일본의 공립학교에 전학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1949년 12월 1일 현재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95명이 전입학하고, 나머지 재일한인 아동의 일본 공립학교로의 전입학은 서서히 행해졌다.<sup>58)</sup>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 조련계의 조선인학교가 일본정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무작정 일본학교에 보낸 것은 아니다.<sup>59)</sup> 일본의 공립학

58) 山口県文書館編, 『山口県政史 下』, 265쪽.

교도 재일한인 학생을 갑자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인 학부형 가운데는 일본의 공립학교에 재일한인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일본의 공립학교에 집단으로 전학한 한인학생들이 조선어 수업이나 한인 교원에 의한 수업을 요구하고, 일본인 교원에 의한 수업을 거부하는 행동도 취했기 때문에, 학교 측도 대응하는 데 고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 이후, 조선인학교의 실태는 지방 교육 당국과 조선인학교 측이 어떻게 타협을 보느냐에 따라 달랐다.

즉, 일본의 공립학교에 학생이 전학하여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을 지키지 못한 곳을 제외하면, 재일한인의 민족교육 실태는 다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본정부에 의한 학교 폐쇄조치에 반대 입장을 관철하고, 자주학교로 조선인학교가 존속된 예이다. 효고(兵庫, 17개교), 아이치(愛知, 10개교), 히로시마(広島, 4개교) 등 44개교(1952년 4월 현재)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도립(都立) 제1조선인소학교나 가와사키시립(川崎市立) 사쿠라모토(櫻本)소학교 분교와 같이 조선인학교가 공립학교 또는 그 분교로서 인가된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학교에서는 재일한인이 자주적으로 민족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이 일본의 학교교육법 하에 있었지만, 일단은 재일한인 학생을 일본의 공립학교에 전학시키지 않고, 재일한인만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일종의 격리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립학교 또는 분교가 허가된 배경에는 한인 아동의 집단 전학에 따른 일본인 학생에 대한 영향을 지적하는 소리나 한인 학생의 전학에 반대하는 학부형의 움직임이 있었다. 도립 조선인학교 14개교, 기타 공립분교 19개교(1952년 4월 현재)가 운영되었다.

제3의 유형은 일본인학교 안에 정식으로 조선인학급이 설치된 예와 과외시간만 민족학급이 설치된 예이다. 전자의 예로는 시가(滋賀, 18개 학급)를 비롯해

59) 오자와는 민단계 학교는 당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았다. 小沢有作, 『在日朝鮮人教育論 歴史編』, 271쪽.

〈표〉 전국조선인학교·학생·교원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청년학교			합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1946. 10	525	42,182	1,022	4	1,180	52	-	-	-	-	-	-	529	43,362	1,074
	*525	42,182	1,032	-	-	-	-	-	-	12	724	54	537	42,906	1,076
1947. 10	541	46,961	1,250	7	2,761	95	-	-	-	-	-	-	548	49,722	1,345
	*541	46,961	1,250	4	1,123	48	-	-	-	30	2,148	160	575	50,231	1,458
1948. 4	566	48,930	1,229	7	2,416	65	-	-	-	32	1,726	129	605	53,072	1,423
1949. 5	288	32,368	955	16	4,555	165	1	364	-	-	-	-	305	37,287	1,120
1949. 7	*331	34,415	995	15	4,487	165	4	666	52	23	952	75	372	40,520	1,287
1952. 4	154	14,144	327	17	2,914	110	1	570	-	-	-	-	172	17,628	437
1953. 6	156	15,986	900	19	4,158	117	4	805	-	-	-	-	176	20,949	1,017
1954. 4	180	17,790	704	22	5,302	255	4	926	-	-	-	-	206	24,018	959

출처 : 朴成台, 『戰後在日朝鮮人運動史·年表, 『部落解放研究』 第11号(1977. 10), 157쪽.  
 주 : 맨 앞에 \*가 표시된 행의 통계는 元容德, 『吉田政府への公開狀, 『民主朝鮮』 1950. 5, 264쪽에, 나머지는 『新しい朝鮮』 第4号, 1955. 2, 301쪽에 실렸던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전국에 77개 학급(1952년 4월 현재)이었고, 후자는 이바라키(茨城, 11개 학급), 교토(京都, 8개 학급) 등 전국에 설치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일본교육법 하에서 한인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이 행해지고, 후자의 경우는 과외시간만 조선어나 조선역사에 관한 교육이 행해졌다.<sup>60)</sup>

이러한 재일한인 측의 움직임 속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재일한인이 가장 많은 오사카의 경우는 일본정부가 지시대로 재일한인 학생을 일본학교에 분산 입학시켰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당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공산당 관서지방위원회 방침이 있었다. 즉 일본공산당은 재일한인에게는 “학교의 건물과 운영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민족교육내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재일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인민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

60) 小沢有作, 『在日朝鮮人教育論 歴史編』, 283~292쪽.

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sup>61)</sup>라고 하여, 재일한인 학생을 오히려 일본인학교에 입학시켜야만 한다고 했던 것이다. 즉, 일본공산당은 인민정권이 수립되면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재일한인 학생은 일본인학교에 들어가 '민주화'의 주체가 되도록 지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공산당은 자신들의 공산주의 활동을 최우선시하여 조선 공산주의 관계자가 민족성을 부각시키거나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이를 견제하는 자세를 취했다.

앞 페이지의 도표 '전국조선인학교·학생·교원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인초등학교의 학생수가 한신교육사건(1948년 4월)과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1949년 10월)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조선인학교에서 일본인학교로 편입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 5. 결론

한신교육사건은 민족교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GHQ와 일본정부가 일본의 사회질서 유지를 우선하여 재일한인에게 일본인교육을 강요하였고, 이에 재일한인이 저항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는 점령군의 지나친 반공정책의 결과였다. 물론 여기에 일본정부가 일조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재일한인은 일본정부에 의한 동화정책 그리고 GHQ에 의한 반공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GHQ는 해방된 민족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지만, 일본을 점령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반공이라는 미국의 정책을 방패삼아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을 탄압하였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자신들의 절대 권력으로 강력히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냉정함을 상실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61) 朴慶植, 『解放後運動史』, 321쪽. 이러한 결정에는 일본공산당원인 박은철 등이 가담했다고 생각된다.



‘배려’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정부는 해방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을 인정할 수도 있었지만, 재일한인의 특수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도를 점령군이라는 절대권력을 통해 달성하였다. 일본정부는 GHQ라는 절대권력에 대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조선인학교 관계자에게는 표면적으로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GHQ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신교육사건에서도 그랬고,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에서도 그랬다.

식민 지배라는 아픈 상처를 가진 재일한인이 해방 이후 일본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어 가기보다는, 이들 사건을 통해 새로운 상처가 만들어지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되고, 결국 양자의 반목은 재생산되게 되었다. 당시의 탄압에 의해 민족교육의 기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재일한인의 일본사회로의 동화가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GHQ와 일본정부의 탄압에 대한 저항의 정신과 역사는 그 후의 세대에게로 이어져, 많은 재일한인들이 여전히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특이한 ‘소수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본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많은 재일한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마치 일본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재일한인은 여전히 재일한인 사회의 하나의 축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념적 대립은 민족교육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신교육사건 당시, 그 주요 대상이 조련계가 운영하는 조선인학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미점령군과 일본정부의 민족교육 탄압에 동조하는 보수세력들이 많이 있었다.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를 둘러싼 보수세력의 입장 또한 변함이 없었다. 민족교육이 엄연한 재일한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동화교육을 당연시하는 의견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출되었다. 개인이나 단

체나 생사를 걸고 대립하게 되면 냉정함을 잃게 마련이다. 하지만, 왜곡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공공연히 말하고, 자민족의 민족적 권리가 탄압받는 것조차 당연한 귀결로 인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60년 전에 일어난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조치라는 과거의 역사는 남북한 정부나 재일한인 그리고 일본정부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던져 준다. 현재의 조선학교의 위기를 남북한 정부, 민단, 총련 그리고 일본정부가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과거의 역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